

- 아스팔트포장 -

관련자료 검토를 통한 대내외 환경 분석



임재희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건설지원팀장

김부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연구위원

본 장에서는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대내외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대한 환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로포장에 관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별 하자기준 분석, 공용성에 근거한 도로포장 기준 조사 및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를 수행하였다.

아보기 위해서는 외국의 성능보증 제도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자의 정의, 기준, 검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의 성능보증 제도와 일대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검토 결과 외국의 성능보증 제도 중 자재 및 시공기술 성능보증(M&W Warranty)이 우리나라의 하자담보 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해외자료 조사, 분석 : 국가별 하자기준

하자담보에 대한 명칭은 우리나라와 외국이 상이하다. 미국과 유럽은 주로 “Warranty”라는 이름의 “성능보증”으로 정의되며, 계약방식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능보증이 존재한다. 자재 및 시공기술(M&W, Material & Workmanship)을 보증하는 제도¹⁾ 또는 성능(Performance)을 보증하는 제도²⁾ 등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하자담보 제도를 알

■ 미국의 하자기준

1990년대 초부터 성능보증 계약 방식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성능보증 계약 방식과 기간 및 성능 기준 인자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대체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 3년, 오하이오 주 7년 이하, 일리노이 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유럽의 하자기준

유럽은 다양한 형태의 성능보증계약을 통해 도로공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하자보증 책임제도와 가장 유사한 방법은 자재 및 시공(M&W) 보증 방식이며, 스페인 1년부터 독일 4년까지 나라마다 다양한 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 자재 및 시공기술 보증(Material & Workmanship Warranty): 자재와 시공방법에 대해 규정한 시방체계 안에서 Warranty 기간 동안 규정된 성능기준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제도
 2) 성능 보증(Performance Warranty): 성능을 규정한 시방체계 안에서 Warranty 기간 동안 규정된 성능기준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제도

